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건 축 디 자 인 과

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김원섭 의원

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(김원섭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6. . .
발 의 자 : 김원섭 의원(1인)
찬 성 자 : 김근한·김민성·김춘남·소진혁 이정희·장세구·정지원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시장의 책무(안 제3조～제4조)

다.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부서검토: 건축디자인과 의견제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에 따라 구미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사후관리계획”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후관리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1.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
2. 도시쇠퇴 방지 대책
3.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방안
4.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사후관리 평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 마다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,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1.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
2.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
3.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
4.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건축디자인과

조 례 명	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□ 검토 사항

○ 근거 법령

▪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

□ 주요 사항

○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
○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□ 검토 결과

○ 본 조례안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○ 특히,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○ 기대효과: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 마련

○ 소요예산: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수반(비용 발생) 요인 없음

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